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상품목에 관해



독자 여러분의엽서나 메일을받습니다.

ESCO지가 독자 여러분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ESCO에 대한 각종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제보하실 사항, 잡지를 읽어보신 소감 등을 적어보내 주십시오. 특히 ESCO협회의 홈페이지(www.esco.or.kr) 게시판 및 「공지사항」란을 이용하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더욱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글은 편집상 일부 수정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7
문래에이스테크노타워 702호
ESCO 편집자 앞
TEL : (02)2679-6464
FAX : (02)2632-7566
w3master@energycenter.co.kr

폐수열과 공기열을 이용한 히트펌프식 보일러와 공기열원 히트펌프 보일러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인지요?

A 공기열을 이용한 히트펌프식 보일러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고 폐수열원을 이용하는 히트펌프는 지원 대상입니다.

2007년도에 에너지절약정책 연구학교 운영지원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2006년도에 지정된 2년차 학교에도 인상된 운영지원금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2006년도에는 에너지절약정책 연구학교 운영지원금이 700만원이었으나,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2007년도부터 운영지원금을 80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2006년도에 지정된 2년차 학교도 올해부터는 700만원이 아닌 8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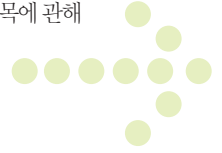
진단사연수교육의 경우 노동부에서 환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환급되는지 궁금합니다.

A 정확한 금액은 노동부에서 교육비 등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되나 보통 25% 정도로 대기업의 경우 약 14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약 16만원 정도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진단사(열부문) 시험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여건상 에너지진단사교육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독학을 하려고 하는데 시중에 시험교재 같은 것이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준비에 필요한 교재나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회에서 5회까지 에너지진단사시험 기출문제자료를 봤는데 열진단기술실무에 대한 문제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답안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1. 공개된 기출문제중 실기시험 문제는 산업인력공단 규정을 준용하여 비공개하였고 과년도 답안도 또한 비공개하였습니다.

2.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자료실>공개자료실>진단사'로 검색하여 에너지진단사 강의자료를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아파트가 주민동의를 받아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314호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르면 “제7조(기계부문의 권장사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5. 환기 및 제어설비

라. 공동주택의 경우, 각 실별 또는 난방 존(Zone)마다 별도의 실내 자동온도 조절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전용면적 60㎡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 위의 라.항을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권장사항으로 볼 때 실별 또는 난방존마다 실내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되 전용면적이 60㎡이하일 경우 선택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인지?

2. 만일 위와 같을 경우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할 때도 동일하게 전용면적이 60㎡이상의 경우 실내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의 기준이 고시된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명쾌한 답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 우선 중앙난방의 경우에는 중앙집중난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산자부고시 제2003-70호)에 의해 온도조절기를 세대별로 1대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계기준에 의해서는 중앙, 개별난방 구분 없이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건물의 경우 온도조절기를 실별 또는 존별로 설치하는 것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명시한 것이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대상건물에 T5 2/28W 형광램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정기와 램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를 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조도반사갓 2/32W는 인증서가 있는데, 2/28W는 고조도반사갓 인증제품이 없습니다.

1. 인증서 제출 시 고조도반사갓 2/32W 인증서를 2/28W 인증서대신 제출해도 무관한지요?

2. 2/28W 인증서 없는 반사갓을 그냥 사용해도 인증서제출과는 상관이 없는지요?

A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교부고시)에 의하면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건물의 경우에 고효율조명기기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형광램프, 안정기, 고조도반사갓을 고효율조명기기로 사용하려고 하나 고조도 반사갓이 램프와 안정기 규격이 맞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에 알아본 결과 규격이 맞지 않는 것은 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인증서가 있는 2/32W 규격의 램프, 안정기, 고조도반사갓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1번 질문인 인증서를 대신 사용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고, 2번 질문인 인증서 없는 반사갓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